

#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7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3. .  
제출자 일자리경제과장

## 1. 제안이유

- 생활임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에 대한 정비를 통해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,
-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3조)
- 나.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(안 제7조제4항)
- 다. 용어 정비 (근로자 → 노동자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·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2. 2. 9. ~ 2. 21.(12일간)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2) 부서협의결과
   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없음
   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 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   - 가) 경기도 : 노동정책과

##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및 출자·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” 를 “노동자” 로, “도모함과 동시에 김포시 경제” 를 “도모하고 지역경제” 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근로자들” 을 “노동자들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고용한 소속 근로자” 를 “채용한 소속 노동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외한다” 를 “제외할 수 있다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” 를 “국·도비 또는 시비” 로, 같은 호 및 제2호 중 “근로자” 를 각각 “노동자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근로자들” 을 “노동자들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근로자” 를 각각 “노동자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
	팀장 직위·성명	일자리정책팀장 최성기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박지혜(☎2276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통하여 <u>김포시 및 출자·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김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노동자</u>----- ----- ----- <u>도모하고 지역경제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생활임금” 이라 함은 <u>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,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노동자들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적용대상)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과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.</p> <p>1. <u>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</u></p> <p>2.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채용한 소속 노동자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제외할 수 있다.</u>-----</p> <p>1. <u>국·도비 또는 시비</u> ----- ----- ----- <u>노동자</u>-----</p> <p>2. ----- ----- <u>노동자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생활임금의 준수 및 장려) ①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시와 위탁·용역 및 그 밖의 계약(이하 “공공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 <u>노동자들</u>----- -----.</p> <p>제7조(생활임금의 준수 및 장려) ① ----- ----- <u>노동자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노동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<u>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